

#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3. 11(목)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2. 1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2. 19.

라. 상정일자 : 2010. 3. 4.(제1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 및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도시계획세 등 과세표준이 상승(5~10%p)하여 보유세 부담 상승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시세 세목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함.  
(안 제3조)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재편성함.  
(안 제10조, 안 제53조, 제55조의3, 제61조)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함. (안 조례 제4293호 부칙 제2조)
- 그 밖에 지방세법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  
(안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동 조례안은

- 「지방세법」 개정(2010. 1. 1)에 따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 농업소득세 폐지 등 지방세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 인하 적용 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며
- 기타 지방세법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주민세 중 소득분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의 명칭 변경, 균등분주민세 존치, 현재 과세 유보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목체계 변동에 따른 우리시 세수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0조의 부과·징수위임 사무와 관련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159조의7에 따라 시장·도지사가 납입관리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는 세목으로 시장·도지사가 지방소비세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55조의3, 제61조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는 주민세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 기타 조항에서는 종전의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할 규정을 각각 주민세 균등분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서식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임.

#### ○ 부칙 개정과 관련하여

- 조례 제4293호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2009년도”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하는 사유는
-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과표 적용비율 상승(5~10%)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 5월 제174회 임시회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을 종전대비 0.01% 인하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 금년도 과세기준일(2010. 6.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2009년과 동일하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2010년 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윤지상, 김소림, 지정구, 이근학, 이상철, 김용재, 조남휘 위원

- 세목체계 변동시 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 및 시세 개정안 부칙 제2조의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 이유는?
- 지방소비세 가중치 산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와 개정취지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부산 등은 인천보다 재정 자립도 등이 비슷하거나 높음에도 실제 가중치 산정시 수도권은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는 300으로 높음?

### <답 변>

#### ○ 김진택 자치행정국장

- 상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지방소비세 723억원이 증액되는 것임. 또한 년도를 변경한 이유는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임
-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겠음

##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윤지상, 김소림, 지정구,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6명)

##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 1.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세 균등분
4. 지방소득세 소득분
5. 자동차세
6. 주행세
7. 지방소비세
8. 담배소비세
9. 도축세
10. 레저세

제3조제4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방소비세

제10조 단서 중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주행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등할”을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각호”를 “각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장”을 “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3절의2(제5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의2 지방소득세 소득분

제55조의3(세율)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장제5절의 제목 “농업소득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법과 영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4조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란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조례 제4293호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세목) ① (생략)</p> <p>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세</li> <li>2. 등록세</li> <li>3. 주민세</li> <li>4. 자동차세</li> <li>5. 주행세</li> <li>6. 농업소득세</li> <li>7. 담배소비세</li> <li>8. 도축세</li> <li>9. 레저세</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lt;신설&gt;</p> <p>③ (생략)</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군지역에 적용하는 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통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세</li> <li>나. 등록세</li> <li>다. 면허세</li> <li>라. 레저세</li> </o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lt;신설&gt;</p> <p>2. (생략)</p> |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i> <li>2. ---</li> <li>3. 주민세 균등분</li> <li>4. 지방소득세 소득분</li> <li>5. 자동차세</li> <li>6. 주행세</li> <li>7. 지방소비세</li> <li>8. 담배소비세</li> <li>9. 도축세</li> <li>10. 레저세</li> </ol> <p>③ (현행과 같음)</p> <p>④-----<br/>-----<b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li> <li>나. ---</li> <li>다. ---</li> <li>라. ---</li> <li>마. 지방소비세</li> </ol> </li> </ol> <p>2.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u>주행세와 담배소비세</u>는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한다.</p> <p>②~⑤ (생략)</p> <p>제2장 보통세</p> <p>제3절 <u>주민세</u></p> <p>제51조 (납세의무자) ① <u>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② <u>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u></p> | <p>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br/>-----<br/>-----<br/>-----<br/>-----주행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2장 보통세</p> <p>제3절 <u>주민세 균등분</u></p>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제52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u>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u></p> <p>제53조 (세율) ① <u>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개인<br/> 가. 시내에서 주소를 둔 개인 4,500원<br/> 나. 시내에 <u>사업장을</u> 둔 개인 50,000원</p> <p>2. (생략)<br/> ② <u>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u></p> <p>1. <u>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u><br/> 2. <u>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u><br/> 3. <u>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u></p> | <p>&lt;삭제&gt;</p> <p>제53조(세율) ① <u>법 제176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u>-----<br/> -----.</p> <p>1. --<br/> 가. -----<br/> 나. --- <u>사업소</u> -----</p> <p>2. (생략)</p> <p>&lt;삭제&gt;</p> |
| <p>제54조 (신고 및 납부) ① <u>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u></p>  |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각각 1월)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 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li> <li>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li> <li>3. &lt;삭제 2000-03-27&gt;</li> <li>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li> </ol> |     |

| 현행   | 개정안               |
|--|-------------------|
| <p>③ <u>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④ <u>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제55조 (수정신고납부) ①<u>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u></p> |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55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p> |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u>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④ <u>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의2 지방소득세 소득분</u></p> <p><u>제55조의3(세율)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u></li> <li><u>2.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u></li> </ol> |

| 현행   | 개정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u>농업소득세</u></p> <p>제61조 (납세의무자) ① <u>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u>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③ 「<u>농업·농촌기본법</u>」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u>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u>지방소비세</u></p> <p>제61조(지방소비세 <u>납입확인</u>) ① <u>시장은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6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 <p>&lt;삭제&gt;</p> |
| <p>제63조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를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lt;삭제&gt;</p> |
| <p>제64조 (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p>   |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p> <p>제65조 (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p>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p> <p>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 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p> <p>제66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72 1323 778 1839"> <thead> <tr> <th data-bbox="172 1323 475 1379">〈과세표준〉</th> <th data-bbox="475 1323 778 1379">〈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72 1379 475 1469">400만원 이하</td> <td data-bbox="475 1379 778 1469">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td> </tr> <tr> <td data-bbox="172 1469 475 1559">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475 1469 778 1559">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 data-bbox="172 1559 475 1648">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475 1559 778 1648">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td> </tr> <tr> <td data-bbox="172 1648 475 1738">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475 1648 778 1738">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td> </tr> <tr> <td data-bbox="172 1738 475 1839">8천만원 초과</td> <td data-bbox="475 1738 778 1839">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td> </tr> </tbody> </table> | 〈과세표준〉                      | 〈세 율〉 | 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8천만원 초과 |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p>&lt;삭제&gt;</p> |
| 〈과세표준〉  | 〈세 율〉                       |       |          |                |                  |                           |                 |                          |                 |                           |         |                             |                   |
| 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       |          |                |                  |                           |                 |                          |                 |                           |         |                             |                   |
|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          |                |                  |                           |                 |                          |                 |                           |         |                             |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       |          |                |                  |                           |                 |                          |                 |                           |         |                             |                   |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          |                |                  |                           |                 |                          |                 |                           |         |                             |                   |
| 8천만원 초과   |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          |                |                  |                           |                 |                          |                 |                           |         |                             |                   |

| 현행   | 개정안               |
|--|-------------------|
| <p>제67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lt;삭제&gt;</p> |
| <p>제69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제70조 (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 <p>&lt;삭제&gt;</p> |
| <p>제71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구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 농업수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lt;삭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④ <u>농업소득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영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경우 및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54조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15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 <p>제154조 (납세의무자) -----<br/>-----<br/>-----<br/>-----<br/>-----<br/>-----<br/><u>주민세 균등분</u> -----<br/>-----<br/>-----<br/>-----<br/>-----<br/>-----</p> <p>제15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br/>-----<br/>-----<br/>-----</p> |

현 행

개 정 안

| 구분 | 과 세 표 준                     | 표준세율                       |
|----|-----------------------------|----------------------------|
| 1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20                    |
| 2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40                    |
| 3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세액 | 구지역 100분의25<br>군지역 100분의10 |
| 4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20                    |
| 5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30                    |
| 6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50                    |

| 구분 | 과 세 표 준                     | 표준세율                       |
|----|-----------------------------|----------------------------|
| 1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20                    |
| 2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40                    |
| 3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분세액 | 구지역 100분의25<br>군지역 100분의10 |
| 4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20                    |
| 5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30                    |
| 6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50                    |

제156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생략)

② 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 징수한다.

부칙<2009-06-01 조례 제4293호>

제1조(생략)

제2조(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적용기한) 제109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략)

제156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생략)

② -----  
주민세균등분-----  
-----  
-----.

부칙<2009-06-01 조례 제4293호>

제1조(생략)

제2조(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적용기한) -----  
-----2009년도 및 2010년도-----  
-----  
-----.

제3조 (현행과 같음)